

제 정 : 2016. 3. 24



經營委員會 運營規程

2016. 3. 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경영위원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이 정한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상임이사(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그 수는 2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제5조 (의장)

- ① 경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6조 (경영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경영위원회는 정기 경영위원회와 임시 경영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 경영위원회는 매월 세번째 월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경영위원회일에 회의 개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임시 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소집권자)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의장직무 대행의 순위에 따른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경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①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경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경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사회와의 관계)

- ① 경영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결의사항 중 공시사항은 다음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로부터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의사항)

- ①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한다.
- ② 제 1항에 따라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경영에 관한 사항

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

나. (10)억원 이상의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기술제휴

다. (10)억원 이상의 신물질·신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 양수, 양도계약 체결

라. 지점 및 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마.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바.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생산활동의 중단, 폐업

사.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제품의 수거, 파기

아.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단일계약의 수주 또는 체결

자.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해지

차.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 경영현안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 미만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나.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 미만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다. 투자,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합계가 (10)억원 이상 자기자본 (5)% 미만인 타법인 출자 및 해외직접투자

라.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 미만의 차입계약 체결

마. 유상증자시 실권주식의 처리

바. (3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사. (30)억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처분

아. 기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백지수표의 발행, 증권거래소 공시 또는

외부기관으로 위원회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사항

3. 기 타

- 가. 주식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대행업무의 결정
- 나. 주식 명의개서 정지기간의 설정
- 다.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 라.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3조 (의사록)

경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 ① 경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재경팀장이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영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2016.3.24)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